

서울고등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104668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고, 피항소인 박
고양시 일산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범진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대표자 사내이사
2. 김
3. 허
4. 황
피고 2, 3, 4의 주소 서울 관악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정규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가합239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2. 31.까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별지1 기재 안무를 수강생들에게 강습하거나 수강생들에 대한 강습에 이용하는 행위
 - 나. 댄스강사 또는 수강생들에 의하여 재현된 별지1 기재 안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
 - 다. 별지1 기재 안무가 촬영, 녹화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 홈페이지 www.○○○○.co.kr,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 ○○○ ○○ 게시판 www.○○○○.co.kr/○○○○/ ○○○○ = 2에 게시하는 행위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는 별지2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을 폐기하라. 다만 2015. 1. 1.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2.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는 별지2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을 폐기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지명령에 종기를 정하고 별지1, 2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수명법관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중음악용 안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안무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국에 2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종합 댄스 교육기관이며, 피고김○○는 피고 회사의○○○ 원장, 피고 허○○, 황○○는 각 위○○○의 댄스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0. 주식회사 ○○○○○○○○○와 아래와 같은 안무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안무(이하 '이 사건 안무'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1) 제1심에서 제출된 2011. 8. 16.자 청구취지 변경서와 당심에서 제출된 청구취지 변경서의 각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는 2011. 8. 16.자 청구취지 변경서라고 해석된다.

○ 계약기간: 2010. 12. 10.~2011. 12. 10.

○ 계약 업무:

주식회사 ○○○○○○○○ 소속 4인조 여성그룹 '○○○(○○○○)'의 싱글앨범 '○○○
○(아니 아니)'안무 제작(2010. 12. 20.까지),○○○이 안무를 익힐 때까지 트레이닝, 뮤직
비디오 촬영 시까지 안무 트레이닝 마무리

○ 계약금액: 300만 원

○ 이 사건 안무의 지적재산권은 원고에게 귀속

다. 피고 허○○는 2011. 1.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방송 댄스 시간에, 피고 황○○는 2011. 1. 11.경부터 2011. 2.경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의 방송 댄스 시간에 각각 피고 회사○○앞에서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재현한 다음 수강생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를 댄스 강습에 이용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안무에 관하여 댄스 강사와 수강생들에 의하여 재현된 안무 모습을 촬영·녹화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o.kr, 피고 회사의○○○에 하는 인터넷 게시판 www.○○○○.co.kr/○○○○/?○○○○ = 2에 게시하였다. 당시 국내 포털 사이트○○○(www.○○○○.com)의 뮤직스페셜 게시판에는 '○○○'의 '○○○○' 안무 배우기에 관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의 안무 기획자로 원고의 사진과 이름이 소개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 사건 안무 강습 영상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하 원고와 피고들이 다투는 쟁점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여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피고들이 2012. 8. 6.자 검증설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 구성원(전아니, 정아니, 송아니, 한아니)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과 '○○○○'이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아니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비록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허○○, 황○○와 같은 강사 각자 특유의 전달기법을 통하여 재현되거나 강습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

면 피고들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안무를 재현하기 위하여 강습한 것이고,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서 확인되는 피고들의 강습 행위 영상 역시 이 사건 안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강사들의 강습 행위 역시 이 사건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다.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 사건 안무 강습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당시 통상적으로 이 사건 안무와 같이 대중가요와 함께 재현되는 무용의 저작권자임을 밝히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내에 잘 알려진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안무의 창작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학원에서 댄스 강습을 할 당시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 사건 안무가 재현되는 영상을 게시할 당시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가수가 소속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안무의 저작권자임을 분명히 하여 장래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것임을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안무와 같이 대중가요의 안무에 있어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관행이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저작자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안무를 강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이를 교육 목적을 위한 강습의 소

재로 인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안무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 898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강습 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안무를 사용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들이 인용한 것은 이 사건 안무 전체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안무 강습을 하고 그 강습 동영상 게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영리적 목적에 의한 이 사건 안무 강습 행위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침해

따라서 피고 허○○, 황○○가 피고 회사, 피고 김○○에 소속된 댄스강사로서, 댄스

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재현된 이 사건 안무를 촬영·녹화하고,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피고 회사 ○○○ ○○ 게시판에 게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바. 금지 및 폐기 명령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고, 영리 목적의 댄스 교육기관과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현재 또는 장래에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대중가요의 통상적인 수요기간, 대중가요와 함께 수요가 창출되는 안무의 수요기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보호기간 2014. 12.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침해 행아니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안무를 수강생들에게 강습하거나 수강생들에 대한 강습에 이용하는 행위, 댄스강사 또는 수강생들에 의하여 재현된 이 사건 안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 이 사건 안무가 촬영·녹화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고 회사의 위 홈페이지와 피고 회사의 위 ○○○ ○○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안무가 촬영·녹화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도 필요

하다고 주장아니,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 ○○ 게시판에 그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 외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다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12. 31.까지 별지2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영구적인 폐기명령을 구아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폐기명령의 필요성 역시 2014. 12. 31.까지만 인정되는 이상 2015. 1. 1. 이후에도 폐기명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손해배상 책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저작권(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액을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1. 1. 10.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약 두 달 동안 32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1인당 12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이 사건 안무를 재현하면서 강습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나 받은 이익을 산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는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허○○, 황○○는 피고 회사, 피고김○○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한 점, 위 기간 중 수강생 수는 32명인 점, 이 사건 안무에 대한 강습기간이 약 2개월인 점, 3개월 과정의 기초반의 경우 주 2일 수업에 225,000원, 주 3일 수업에 27만 원이 점, 원고가 이 사건 안무 창작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안무 무단 이용 기간,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의 마지막 종료일인 2011. 2. 28.부터[원고는 2011. 1. 10.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아니, 침해 행위 개시일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적 손해액을 고려하여 배상액 원금에 반영하였고 매일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최종 침해행위 종료일(2월

말일이자 마지막 월요일이 28일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에서 구하는 금지명령, 폐기명령 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금원지급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별지1

안무의 표시

소속 그룹 "○○○(○○○○)" [구성원: 전○○ (1989. 10. 13.생), 송○○(1990. 5. 5.생), 정○○(예명: ○○, 1990. 2. 2.생), 한○○ (1990. 10. 6.생)]이 김○○ 작사, 작곡의 "○○○○ (○○ ○○)" 악곡을 공연, 실연하거나 방송하면서 위 악곡의 멜로디, 박자 및 가사의 진행에 따라 순○적, 반복적으로 연결하거나 조합, 배열하여 행하는 신체적 동작 또는 몸짓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래 기재 안무.

(Intro)

○○○ ○○ ○○ (○○○ ○○ ○○)
○○○ ○○ ○○ (○○○ ○○ ○○)
○○○ ○○ ○○ (○○○ ○○ ○○○)
○○○ ○○ ○○

- "○○○○" 악곡의 처음 4마디 멜로디인 서주(序奏, intro) 부분에서 '○○○ ○○ ○'이라는 의성어가 4번 반복이 되고, '○○○ ○○ ○○'이라라는 의성어가 나올 때, 이 "○○○○" 전체 안무의 느낌인 ○○ ○○의 움직임 표현하는 동작 중의 ○○로서 ○○○은 ○○에 ○○, ○○○ ○○○ ○○○에 댄 상태에서 최대한 ○○계 ○○를 ○○○○ 거리는 동작으로 시작한다.

○ 마디 (한마디가 드럼 박자로 1, 2, 3, 4임) 이후에는 ○○을 ○○고 ○ ○○은 ○○

○○고 ○○를 ○○○○거리는 동작을 하면서 천천히 ○○을 ○○○게 하면서 ○○, ○, ○○○, ○로 ○ 마디 움직이다가, 마지막 드럼이 ○○○○하는 소리를 내는 'TOM'(드럼에 ○○○○○하는 소리를 'TOM'이라 함) 부분에서 ○○으로 000○ ○○한 후, ○○과 ○○○을 ○○○ ○으로 내밀면서 ○○를 펴고 ○○○○는 동작이 순○ 연결된다.

(전주)

○○○ ○○ ○○(○○ ○○(○○)

○○○ ○○ ○○(○○ ○○(○○)

○○○ ○○ ○○(○○ ○○(○○)

○○○ ○○ ○○(○○○(○○)

- 연속되는 "○○○○"악곡의 전주(前奏)에 해당하는 '○○○ ○○ ○○(○○ ○○(○○))'으로 시작하는 네 마디 중,

① 첫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 ○○ ○○(○○ ○○(○○))' 부분에서 위 서주(序奏) 마지막 부분인 'TOM' 부분에서 ○○를 펴고 나가는 동작과 연결된 동작으로 ○○은 ○○ ○○○○, ○○○은 ○○ ○○으로 ○○○ ○○앞서 ○○ ○○○, ○○을 ○○ ○ ○으로 ○ 번 ○고, ○로 ○ ○ ○ 다음, 다시 ○으로 세 번 찬 후, ○○으로 ○을 ○○앞서 ○ ○을 ○○으로 별린 ○에 ○○○을 드는 동작을 하고, 이때 ○은 ○○을 ○○을 때 ○○을 나란히 ○○으로 뻗고, ○○○을 들면서 ○○ ○으로 당기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② ○ 번째 마디에 나오는 '○○○ ○○ ○○ ○○○ ○○○(○○○)' 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과 ○○○을 ○○○ ○으로 내밀면서 ○○ ○ ○, ○○○ ○ ○씩 ○○을 ○○○ ○는 동작을 하면서 ○○ ○○○○으로 000○ ○○을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③ 세 번째 마디에 나오는 '○○○ ○○ ○○(○○ ○○(○○))'는 제○○에서 ○ ○○○을 펴고 ○○ ○○○○으로 ○○ ○○ ○○앞서 ○○ ○○으로 작게 ○ 번 돌리고, ○ ○을 다 펴서 ○ ○을 그리면서 ○○ ○○ ○○ 후, ○○을 쥐고 ○○ ○에서 ○○을 비틀어주는 동작을 연속하며,

④ 마지막 네 번째 마디인 '○○ ○ ○ ○○○ ○○○'은 "○○○○"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인 이성○○에 대한 ○○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는 첫 번째 'Verse'(시에서 말하는 1연 2연과도 같음.)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전주 마디로서 그 이성 ○○에 대해 ○○○ ○을 하며 ○○하는 동작으로 만들어졌고, 이 동작은 ○ 번째 마디와 같은 동작으로 ○○을 ○○○앞서 ○는 동작으로 연결된다.

(1절 Verse 1.)

○○○○○ ○ ○ ○ ○ ○○○○○ ○ ○ ○ ○

- 1절 'Verse 1.' 첫 번째 마디인 '○○○○○ ○ ○ ○ ○'에 동작은 가사에 맞는 우쭈대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을 모으고 아래, ○○ ○○○ ○○○ 하며, ○○는 그 ○○○ ○○ ○○○다 ○ ○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 ○ ○ ○'에 동작은 가사 한 음 한 음에 맞추어 네 동작으로 표현하였는데, '넌 넌'은 음 그대로 ○○○, ○○ ○ ○씩 ○○○ 가면서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며,

- 1절 'Verse 1.' ○ 번째 마디인 '○○○○○ ○ ○ ○ ○' 부분에서는 ○○을 쥐고 ○ ○은 ○○○○, ○○○은 ○○ ○○ 방향으로 ○○ ○으로 ○○○ ○○앞서 ○ ○ ○ ○는 동작을 한 후, ○○○ ○○ ○○는 ○○○, ○○으로 ○○○○○○하는 동작으로 연결된다.

○○○ ○○○ ○○ ○ ○○○ ○○

- 1절 'Verse 1.' 세 번째 마디인 '○○○ ○○○'라고 부르는 코러스 부분은 이 "○○○○"의 안무의 표현 모티브인 ○○ ○○ ○○처럼 ○○을 모은 후 ○을 ○○ ○○○ 흔들다가, ○ ○○을 ○○ 젖힌 상태에서 ○○을 ○○로 ○○고, ○○를 ○○과 ○○○으로 ○○앞서 ○○ ○○ ○는 동작을 하고, 이어 ○○을 약간 접었다 다시 펴면서 ○○○○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이어서 나오는 1절 'Verse 1.' 네 번째 마디인 '○○ ○ ○○○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화가 나서 ○○ 쥐고 ○○ ○○○ ○ ○○○를 ○○○며 ○을 약간 ○○○로 ○○ 채, ○ ○을 ○○○ 가면서 천천히 ○으로 ○○○○○○ ○○○으로 연결된다.

○○ 있는 ○ ○ ○ ○ ○ ○ ○ ○

- 1절 'Verse 1.' 다섯 번째 마디인 '○○ 있는 ○ ○ ○ ○ ○ ○ ○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으로 ○○○앞서 ○○○으로 ○ ○○을 만들면서 ○ ○으로 ○ ○ ○ ○씩 ○○○ ○ ○○ 난 후, 마지막 '○ ○○' 부분은 ○ ○○○을 ○ ○ 엇갈리게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이때 '○○○'의 댄서 중 한명인 '전○○'은 ○○○으로 이동하여 노래 부르면서 노래가사에 맞추어 프리댄스를 추고 있다.

○○ ○ ○○○ ○○ ○ ○ ○ ○ ○ ○

- 1절 'Verse 1.' 여섯 번째 마디인 '○○ ○ ○○○ ○○ ○ ○ ○ ○ ○ ○'에 노래를 부르

지 않는 멤버 ○○(송○○, 한○○, ○○)은 다섯 번째 마디에서 ○으로 이동하여 노래 하는 '전○○'과 간격을 벌린 후, 여섯 번째 마디에서 ○에서 설명하였듯이 ○○을 내 린 후 ○○, ○○○, ○○ 한번 씩 ○○를 구○○○ ○○를 반복하여 마치 ○○ ○○ ○○ 동작으로 연결되고,

- '○ ○○' 부분에서는 ○○ ○○가락을 ○으로 내민 후, ○○와 같이 ○○, ○○○으 로 왔다 갔다 흔드는 동작을 취하여 위 안무 해당 가사의 '○○'라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으며,

- 이때 ○○○ ○○○ 위치에서 노래하고 있는 '전○○'은 다섯 번째 마디에 이어 노래 가사에 맞추어 프리덴스를 추고 있음.

○○○ ○○○ ○○ ○ ○○○ ○○

- 1절 'Verse 1.' 일곱 번째 마디인 '○○○ ○○○'라고 부르는 코러스 부분은 앞서 설 명한 1절 첫 'Verse' 세 번째 마디인 '○○○ ○○○'와 가사는 똑같으나, 1절 ○ 번째 'Verse' 첫 마디 동작을 하기 위해 ○○에서 떨어져 있는 멤버들 중 노래를 부르지 않 은 멤버 ○ ○은 ○○으로 ○○을 벌리면서 ○ ○씩 ○○○처럼 이동하고, 노래하는 '전○○'은 ○○○로 모이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1절 'Verse 1.'에 마지막 마디인 '○○ ○ ○○○ ○○'에서는 가사에 충실하여 여자 들이 ○ ○○ ○○ ○○ 앞서 ○○○○가 ○○을 ○으로 ○○앞서 ○○ ○○는 동 작으로 연결됨.

(1절 Verse.2)

○○○ ○○○ ○○○○○ ○○○

- 1절 'Verse 2.' 첫 마디인 '○○○ ○○○'는 이 부분을 부르는 멤버 '한○○'가 ○○
○ 이성 ○○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으로 나오면서 ○○○○하는 동작을 하고
있고, 그 외 멤버 ○○(전○○, 송○○, ○○)은 ○에서 '한○○'가 ○○○○하는 가사에
맞추어 주인공인 이성 ○○○ 같이 ○○○ ○○○○하는 동작으로 ○○을 끼고 ○을
흔들면서 이에 동조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1절 'Verse 2.' ○ 번째 마디인 '○○○○는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가사 '○
○○○'의 '○○'이란 단어에 맞추어 ○○을 ○과 같이 ○○로 흔들어 ○○이 부는 동
작을 표현하면서 이동한 ○ 마지막 '○○○'라는 가사에서는 멤버 다 같이 ○○○○하
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1절 'Verse 2.' 세 번째 마디인 '○○ ○○ ○ ○○' 부분은 ○ ○을 ○○○게 ○ ○
○에 모은 후 흔드는 동작으로 표현하여 가사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성 ○○가 ○○ ○
○ ○○○이라는 느낌을 주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1절 'Verse 2.' 네 번째 마디인 '○○○도 ○○ ○○' 부분은 가사의 주인공인 이성
○○의 ○○에 ○○○이 ○다는 것을 노래 부르는 '한○○'에게 멤버 ○ ○(전○○, 송
○○, ○○)이 알려주는 것처럼 ○ ○○에 ○을 ○○ ○○○○를 알려주는 듯한 동작으
로 연결됨.

○○ ○○○ ○ ○○○ ○○○ ○○○ ○○○

-1절 'Verse 2.' 다섯 번째 마디인 '○○ ○ ○○ ○'에 해당하는 동작은 이 부분부터 반전이 되는 가사내용에 맞추어 ○○하는 이성 ○○에게 ○○○며 ○○○ ○○○는 느낌으로 ○○과 ○○○의 ○○로 ○○○ 가며 ○○○을 ○○○고, ○○에 ○○를 ○○ 살짝 올리면서 ○○으로 이동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1절 'Verse 2.' 여섯 번째 마디인 '○ ○○ ○○○ ○○ ○' 부분은 ○○ 생각하는 ○○○ ○○는 ○○들의 ○○을 표현하여 ○○에 ○○을 모으며 ○을 ○○, ○○○으로 혼드는 동작으로 표현하였고, 마지막 '○○ ○'의 단어는 ○에 다섯 번째 마디인 '○○ ○'의 나오는 부분 똑같은 느낌으로 ○○○으로 ○○○을 ○○○앞서 ○○를 살짝 올리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1절 'Verse 2.' 일곱 번째 마디인 '○○○○ ○○○'의 해당하는 동작은 ○○을 ○○에 올리고 ○로 가면서 ○ ○을 ○○○ 가며 ○으로 내미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1절 'Verse 2.'에 마지막 마디 '○○ ○○○○' 부분은 ○○에 ○○을 모으며 '○○'을 표현하고, '○○○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을 ○○ ○한 동작으로 ○○을 ○○ ○으로 뺄고, ○○○으로 ○○○를 돌면서 ○○을 위에서 ○○로 ○○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이어서 마지막 부분 'TOM'이 나오는 ○ 박자(1,2)에 모든 멤버들과 함께 ○○는 ○한 동작을 하며 ○○를 바꾸는 동작으로 구성됨.

(1절 후렴)

○○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첫 번째 마디인 '○○ ○○ ○ ○○ ○○ ○○○○ ○○ ○○)' 가사 중 ○부분 '○○ ○○ ○' 가사가 'Verse 2.'의 마지막 마디 마지막 ○ 박자 'TOM' 부분과 오버랩 되나, 이때 가사에 맞추지 않고 박자에 맞추어 ○○의 ○○와 ○○○의 ○○를 ○○○ ○으로 내밀면서 ○○○을 지척하는 동작을 하고, ○○이 나올 때는 ○○○을 ○○에 ○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을 ○면서 ○으로 나오게 하고, ○○○이 나올 때는 ○○을 ○○에 ○르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을 ○으로 ○면서 나오게 하면서 제○○에서 ○○게 ○○○도 ○으로 가는 듯한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 번째 마디인 '○○ ○○ ○ ○○ ○○ ○○○○ ○○)' 부분은 전주의 세 번째 마디에 나오는 '○○○ ○○ ○○(○○ ○○(○○))'에 나오는 동작과 똑같은 느낌으로 ○ ○을 ○○ 근처로 ○○○가 ○ ○○○을 펴서, ○○으로(○○○ ○○ ○○으로) ○○ ○○에서 작은 원을 ○ 번 그린 후, ○○을 다 펴서 ○ ○을 그리면서 ○ ○ ○○ 후, ○○을 쥐고 ○○ ○에서 ○○을 비트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세 번째 마디인 '○○○○ ○○○'의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은 ○○○○, ○○○은 ○○ ○○ 방향으로 ○○ ○으로 ○○○ ○○ 다음, ○ ○을 활짝 펴면서 ○로 물러난 후, 마지막 단어인 '○○○'를 강조하기 위하여 '○○○' 부분에서는 ○○○을 ○ 상태에서 ○○을 흔드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첫 번째 후렴구의 네 번째 마디인 '○○○ ○○○ ○○ ○○ ○'에 부분은 가사에 맞

추어 너무 ○○하는 이성을 본 것처럼 ○○에 ○○을 모으고 ○○를 위, ○○○ ○○
○○ 흔들며 ○근○근하는 동작을 하면서 ○○○(○○○ ○○)으로 ○을 돌렸다가 다
시 ○으로 ○을 ○○앞서 '○○' 부분에서 ○○을 턱에 붙였다가 ○으로 퍼면서 뛰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다섯 번째 마디인 ○○ ○○ ○ ○○ ○○ ○○○○ ○○)'는 첫
번째 후렴구의 첫 번째 마디인 '○○ ○○ ○ ○○ ○○ ○○○○ ○○ ○○)와 거의
흡사한 동작과 느낌이지만 가사에 강조되는 '○○ ○○ ○'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 ○○'라고 말하듯이 ○○○을 흔드는 동작으로 ○○, ○○○ ○○○ 가며 흔들고,
○은 반대로 ○○○, ○○ ○○○ ○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여섯 번째 마디인 '○○ ○○ ○○ ○○ ○○ (○ ○○ ○○ ○○
○)'는 첫 번째 후렴구에 ○ 번째 마디인 '○○ ○○ ○ ○○ ○○ ○○○○ ○○)'에
동작과 똑같은 동작으로 ○○ 근처로 ○ ○을 ○○○가 ○ ○○○을 펴서 ○○으로 ○
○ ○○에서 작은 원을 ○ 번 그린 후, ○○을 다 펴서 ○ ○을 그리면서 ○ ○ ○○
후, ○○을 쥐고 ○○ ○에서 ○○을 비트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첫 번째 후렴구의 일곱 번째 마디인 '○○○○ ○○○' 부분은 첫 번째 후렴구의 세
번째 마디인 '○○○○ ○○○'와 같이 마지막 단어인 '○○○'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
○○은 ○○○○, ○○○은 ○○ ○○ 방향으로 ○○앞서 ○○ 부분으로 ○○○가 ○

○을 활짝 펴면서 ○로 물러난 후, 마지막 단어인 '○○○'를 강조하기 위하여 '○○○' 부분에서는 ○○○을 ○ 상태에서 ○○을 흔드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첫 번째 후렴구의 마지막 마디는 '○○○ ○○○ ○○ ○○ ○○ ○○' 부분은 첫 번째 후렴구의 네 번째 마디인 '○○○ ○○○ ○○ ○○ ○'의 부분과 같이 가사에 맞추어 너무 ○○하는 이성을 보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에 양 ○을 모으고 ○○를 위, ○○○ 약간 흔들거리다가 '그런 ○○' 부분에서는 ○ ○의 ○○○을 ○○ 펴고 ○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으로 당기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후렴구 마지막 가사인 '○○ ○○'에서는 '○○' 부분이 간주의 첫 번째 마디인 '○○○ ○○○ ○○ ○○' 부분과 오버랩(앞 가사와 뒷 가사가 맞물려 나오는 것)되어 그 부분은 ○○하고, ○에 나오는 간주의 첫 부분 동작으로 연결됨.

(간주)

○○○ ○○ ○○ (○○○ ○○ ○○)

○○○ ○○ ○○ (○○○ ○○ ○○)

○○○ ○○ ○○ (○○○ ○○ ○○)

○○○ ○○ ○○

- "○○○○" 간주인 '○○○ ○○ ○○' 부분은 "○○○○"의 intro 부분처럼 ○○를 들쭉이는 동작으로 시작하지만, 간주에선 ○ 명씩 짝을 이루어 ○○를 바꾸기 위하여 가볍게 ○○○앞서 ○○를 ○○○○ 거리는 동작으로 약간의 변형이 되게 연결되고,

○ 마디 이후엔(한마디가 드럼 박자로 1,2,3,4입니다.) ○○(○○○ ○○○)에 있는 커플(한○○, ○○)이 ○○○로 이동하여 한마디 반을 장난치는 동작이 표현되고, 마지막

부분인 'TOM'이 나오는 ○ 박자에(1,2) ○○으로 뛰어가면서 벌어져 2절 'Verse'를 준비하는 대형으로 이어짐.

(2절 Verse 1.)

- 2절 'Verse 1.'의 첫 번째 마디인 '밀고 당기지 줌 마 아 아 ○ ○○' 부분에서 가사에 충실히 맞추어 각 멤버들이 ○ 그룹(○○ 전○○과 ○○, ○○○ 송○○과 한○○)으로 나뉘어 ○○○을 ○ 채로 ○○을 들고, 한○은 ○ 전체를 ○○○에게 내밀면서 미는 동작을 취하고, 다른 ○은 ○○○이 미는 동작에서는 당기는 동작을, ○○○이 당기는 동작을 할 때는 미는 동작을 각 2회 반복하는 동작으로 연결됨.

그 중 ○○○에 있는 멤버 들(전○○,송○○) 중 노래하는 '송○○'을 '전○○'이 강하게 밀고 당기나, 마지막 가사인 '○ ○○'에서 '송○○'이 ○○○ ○○를 세워 입 주○○ 가져왔다가 강하게 뿌리치는 동작을 하여 밀고 당기지 말 것을 강조하는 동작을 하고 있음.

- 2절 'Verse1.'의 ○ 번째 마디인 '술직한 게 난 ○○ 아 아 ○ ○○'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인 '좋다'라는 느낌과 박자에 맞추어 표현하기 위해 ○○을 ○○다 ○ ○○으로 ○○○ 하며 ○○○, ○○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으로 나오는 동작을 한 후, ○○○, ○○을 ○레로 모으면서 ○은 내렸다가 ○○로 올리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마지막 '○ ○○' 부분은 부정하는 가사에 맞추지 않고, 한 음 한 음에 맞추어 ○○

를 관자놀이 부분에 콧코 ○ 번 치는 동작으로 연결됨.

○○○ ○○○ _____

- 2절 'Verse 1.'의 세 번째 마디인 '○○○ ○○○' 부분은 1절 'Verse 1.'의 세 번째 마디인 '○○○ ○○○'라고 부르는 코러스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의 안무의 표현 모티브인 ○○ ○○ ○○처럼 ○○을 모은 후 ○을 ○○ ○○○ 흔들다가, ○ ○ ○을 ○○ 젖힌 상태에서 ○○을 ○○로 ○○고, ○○를 외○과 ○○○으로 ○○앞서 ○○ ○○ ○는 동작을 하고, 이어 ○○을 약간 접었다 다시 펴면서 ○○ ○○ ○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또한 2절 'Verse 1.'의 마지막 마디인 '더는 못 참겠어 정말' 부분도 1절 'Verse 1.'의 네 번째 마디인 '○○ ○ ○○○ ○○' 부분과 가사 및 악곡이 같아서 화가 나서 ○○ 쥐고 ○○ ○○○ ○ ○ ○○를 ○○○며 ○을 약간 ○○(○○○ ○○○)으로 ○○ 채 ○ ○을 ○○○ 가면서 천천히 ○으로 ○○○○○ ○○으로 연결됨.

(2절 Verse.2)

○○○ ○○○ ○○○○ ○ ○○ ○○

- 2절 'Verse 2.'의 첫 번째 마디인 '○○○ ○○○' 부분은 가사에 맞추어 굉장히 지겹고 귀찮다는 듯이 멀어져가면서 먼저 ○○를 들어 흔들고, 그다음 ○ ○○○을 펴서 ○○ 향하게 한 채, 귀 ○에서 들어 ○○○○ 흔들면서 ○○도 같이 흔드는 동작을 하고, 모든 멤버가 ○○에서 ○○○으로(○○○ ○○○에서 ○○으로) 이동하여 노래하는 '한○○'가 ○○○로 위치하고 나머지 멤버가 ○○○(○○○ ○○)으로 이동하는 구성으로 표현된 동작이 연결되고,

- 2절 'Verse 2.'의 ○ 번째 마디인 '○○○○ ○ ○○ ○○' 부분은 가사에 맞추어 노래하는 '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멤버들은 ○을 엇갈리게 하면서 ○○, ○, ○○○, ○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이때 ○○은 가사 중에 '○○○ ○○'라는 부분에서는 ○○을 ○ 후 ○ ○○을 젖힌 후에 ○○를 위, ○○○ 들썩거리고, 가사의 마지막인 '○○○' 부분에선 ○의 첫 번째 마디의 느낌과 비슷하게 ○○을 ○ 후 ○○○○ 흔드는 동작으로 표현되고, 노래하는 한○○는 ○ ○을 ○○○가 ○○○으로 흔드는 동작을 하고 있음.

○○ ○○ ○ ○○ ○○ ○○○○ ○○

- 2절 'Verse 2'의 세 번째 마디인 '○○○○ ○○○' 부분은 가사에 맞추어 노래하는 '한○○'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 ○○○에 있는 '한○○'를 쳐다보고 ○○○을 집으면서 ○○으로 배에 올린 후 하늘을 바라보며 박장대소하듯이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한○○는 입을 ○으로 가리면서 웃는 동작을 하며,

- 2절 'Verse 2.'의 네 번째 마디인 '○○○○ ○○ ○○'의 부분은 ○○(화면의 ○○) 부분에 이성 ○○가 있다고 가상으로 상징하고, 가사에 맞추어 출썩대고 철이 없다는 듯이 ○○, ○○○ ○○○ 가면서 ○○○○하며 ○○○에서 ○○으로(○○○ ○○에서 ○○○으로) 이동하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

○○○○ ○○○ ○○ ○○○○

- 2절 'Verse 2'의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의 동작은 ○○하는 이성 ○○에게 ○○○며 ○○○ ○○○는 느낌으로 ○○을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에서 ○○ ○○와 ○

○○ ○○로 ○○○ 가면서 ○○○을 ○○○면서 ○○으로 이동하는 동작과 '○ ○○ ○○○ ○○ ○' 부분은 ○○ 생각하는 ○○○ ○○는 ○○들의 ○○을 ○○에 ○을 모으며 ○을 ○○, ○○○으로 흔드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라는 가사에서는 ○ ○○○으로 ○○○을 지적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의 해당하는 동작은 ○○을 ○○에 올리고 ○로 가면서 ○ ○을 ○ ○○ 가며 ○으로 내미는 동작이며, '○○ ○○○○' 부분은 ○○에 ○을 모으며 '○○' 을 표현하고 '○○○ ○'에 가사는 ○○을 ○○ ○한 동작으로 ○○을 ○○ ○으로 뺄고 ○○○으로 ○○○를 돌면서 ○○을 위에서 ○○로 ○○는 동작으로서 1절 'Verse 2.'의 다섯 번째와 마지막 마디까지와 같은 동작이 반복됨.

(2절 후렴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절 후렴구 첫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의 안무는 1절 후렴구의 첫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악곡 및 가사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 반복됨.

다만 마지막 '○○ ○○' 가사가 1절 후렴구 마지막 부분과는 다르게, 오버랩하여 반복되지 않고 랩의 첫마디가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 '○○'가 강조되도록 ○○을 ○이 올린 후 ○○를 위, ○○○ ○○○○ 이며 일렬종대로 모였다가 랩이 시작되는

박자에 ○○(○○)를 뺀 나머지 멤버가 ○○을 벌리며 ○으로 벌어지는 동작이 연결됨.

(Rap)

○○○○ ○ ○○ ○○ ○○

- 첫 번째 Rap의 첫 번째 마디인 '○○○○ ○ ○○ ○○ ○○' 부분은 ○○ '○○'를 강조하기 위해 ○○(○○)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을 펼쳐진 상태로 벌어져서 멈춰 있다가, 마지막 '○○ ○○' 부분에 ○로 돌아서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 '○'는 박자와 노래에 맞춰 가사의 뜻인 '○○'의 느낌으로 프리댄스를 하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

- 첫 번째 Rap의 ○ 번째 마디인 '○○ ○○ ○ ○○ ○ ○ ○ ○○' 부분은 ○○ '○○'를 강조하기 위해 ○○(○○)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와 엉덩이를 ○○○ ○○○에서 ○○으로 리듬에 맞추어 ○○ 후 ○○와 엉덩이를 ○○에 ○○○을 본 후 ○○를 모으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 첫 번째 Rap의 세 번째 마디인 '○○○ ○○○○○ ○○○ ○○ ○○ ○○' 부분은 ○의 ○ 마디와 마찬가지로 ○○(○○)를 강조하기 위해 ○○(○○)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 번째 마디보다 최대한 ○○고 ○○하게 ○○는 위, ○○○ ○○은 폼다 접었다 하는 동작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 부분에서 '○○'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전원이 ○○를 돌아 ○을 당당하게 쳐다보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첫 번째 Rap의 네 번째 마디인 '○○○ ○○ ○○ ○○○' 부분에서는 정지된 동작으로 서 있다가 '○○'○○ ○ ○○'의 '○○'부분에서는 ○○○으로 ○을 ○○○는 동작으로 연결됨.

○○○ ○○○○○ ○○○ ○○ ○○○ ○○

-첫 번째 Rap의 마지막 마디인 '○○○ ○○○○○ ○○○ ○○ ○○○ ○○' 부분은 가사내용에 충실히 맞추어 ○○으로 이성 ○○에게 다가오라는 느낌으로 몸짓하면서 멤버들은 도망가듯이 ○로 물러나는 동작으로 연결됨.

(브릿지)

○○○ ○○○○○ ○○○

○○○ ○○○○○ ○○○

○○○ ○○○○○ ○○○

- 첫 번째 브릿지(노래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바로 직전의 부분)의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 부분의 안무는 이 "○○○○"노래에서 유일하게 가사와 멜로디 부분만 들리는 부분으로서 멤버들이 ○ ○을 ○○○가 ○○ 펼치는 연기하는 듯한 동작을 함.

다만 마지막 부분인 '다가와 줘'에 부분부터는 'TOM'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을 ○○○ 가면서 뛰는 동작으로 연결됨.

(3절 후렴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지막 후렴 부분인 첫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는 1절,2절 후렴구의 첫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같은 동작이 반복됨.

그리고 후렴구의 마지막인 '○○ ○○' 부분은 맨 처음 노래가 시작하는 intro 부분으로 돌아가는 구성으로 만들어짐.

(Outro)

○○○ ○○ ○○

○○○ ○○ ○○

○○○ ○○ ○○

○○○ ○○ ○

- 마지막 outro 부분은 intro와 마찬가지로 '○○○ ○○ ○○'에 처음 ○ 마디는 제○

○에서 ○○○○ ○○ 최대한 ○○계 ○○를 위, ○○○ ○○○○ 거리는 동작으로 시작하고, ○ 마디 이후엔 전체적으로 ○○을 ○○로 흔들면서 최대한 ○○계 ○로 움직였다가 마지막 부분 'TOM'이 나오는 마지막 마디에 멤버 모○ ○○은 ○○○○, ○○ ○은 ○○ ○○ 방향으로 ○○○ ○○앞서 ○으로 달려와 ○을 잡고 최대한 여성스럽게 인사를 동작으로 마무리 함.

별지2

피고 주식회사 ○○○○컴퍼니 홈페이지 www.○○○○.co.kr 또는 피고 주식회사 ○○
○○컴퍼니 ○○○ ○○ 게시판 www.○○○○.co.kr/○○○○/?○○○○ = 2에 등재된
별지1 기재 안무가 표현된 사진 및 동영상